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 원 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학교폭력
원 고	□□□ 외 2	피 고	○○○○○○○○학교장
판결선고일	[1심]2019. 6. 13. 원고승소	비 고	
사건개요	❍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라 한다)는 2018. 7. 5. 회의를 개최하여 2학년 학생인 원고가 2018. 6. 15. 같은 학년 학생인 ■■■에게 학교폭력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아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조치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게 피해학생인 ■■■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주 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게 한 서면사과 조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판결이유	❍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13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하고,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그 구성원인 학부모위원들의 선출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위배된 것이어서 그 구성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